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HK교수 신규임용에 관한 시행지침

제정 2009년 9월 16일

1. 목적

'서울대학교 인문한국(HK)교수 임용 및 운영 규정', '서울대학교 전임교수 및 조교 임용 규정', '한국연구재단 인문한국사업 관련 운영지침'에 따라 신규채용후보자 심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실적물

- 가. 박사학위 논문을 연구실적물로 인정하되, 박사학위 논문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출 판한 것은 박사학위 논문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 나. 학술지에 발표되지 아니한 연구실적물은 학술지 발간기관 책임자가 발급한 게재예정 증명서와 함께 제출하며, 공개발표 전까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 다. 게재예정증명서를 제출한 논문은 발간 즉시 제출하되, 임용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3. 심사위위

- 가. 전임교수를 원칙으로 한다.
- 나. 응모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는 인사위원이 담당한다.
- 다. 연구실적심사 위원은 서울대학교 인사규정에 따라 주관대학기관장이 위촉한다.
- 라.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공개채용지원 추천자,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자는 원칙적으로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4. 심사항목 및 단계별 항목별 배점

HK교수 신규임용 응모자에 대한 심사 항목 및 배점(100점 만점 기준)은 "5. 단계별 항목별 배점기준"과 같다.

5. 단계별 항목별 배젂기준

단계별	항목별	평가세항	배 점	합격기준	비고
기초 및 전공심사 (1단계)	연구실적	적합성 평가	상(3)·중(2)·하(1)	"중(2)"이상	
		논문내용 평가	30(수,우,미,양,가)	80%이상	
	총괄연구업적	총괄연구업적	10		
면접심사 (2단계)	공개발표	전문성	20		
		전달능력	10		
	연구계획	연구활동 능력	5		
		연구주제와 방향의 적합성	5		
	임용적합성 (인사위원회 평가)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	10		
		교수로서의 자질 및 윤리의식	5		
		대학 및 사회 기여도	5		
합 계			100		_

6. 심사단계 및 평가절차

가. 기초 및 전공심사(1단계)

1) 모집분야에 대한 적합성 : 기초심사는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이 "모집분야와의 적합성 여부"를 상(3.0점)·중(2.0점)·하(1.0점)로 평가하여 각 위원별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을 구한 후, 심사위원별 평균 점수 중 최고 및 최저점수를 제외한 심사위원 3인의 평균이 "중(2.0)"이상을 적격으로 인정하고, "중(2.0)"미만일 때는 부적격으로,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2) 연구실적물

- 가) 연구실적물 심사위원은 유관교수의 자문을 받아 소장이 주관대학(원)장에게 추천하며 학내 및 학 외 인사를 구분하여 학내인사 4인, 학 외 인사 6인 이상을 추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동일 모집분야를 심사할 교원이 학내에 없거나 하위직일 경우 타교 교원을 추천할 수도 있다.
- 나) 원장은 소장이 추천한 후보자 중에서 5인을 임명위촉하되, 학 외 인사 2분의 1 이상이 포함되도록 한다.

3) 총괄연구업적

- 가) 총괄연구업적은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응모자가 제출한 총괄연구업적 목록을 토대로 모집분야와 적합성, 실적 등을 고려하여 1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단, 연구 경력이 많은 응모자가 연구 경력이 적은 응모자보다 일방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지 않도록 통산 점수가 아닌 연간 점수로 평가한다.
- 나) 각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비교하여 최고와 최저 점수 간에 5점(만점의 1/2) 이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를 합산하여 평균한 점수로 한다.

나. 면접 심사(2단계)

- 1) 인사위원회는 면접심사 대상자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 가)「기초 및 전공심사 평가 결과」에 의거 분야별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대상자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나) 1단계 연구실적물 심사결과 적격자를 대상으로「내용평가」점수의 환산점수 및「총괄연구업적」등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상위 성적순으로 정한다.
 - 다) 소장은 서면 또는 이메일 등으로 선정된 대상자에게 공개발표 일정 등을 명 시하여 통지한다.

2) 공개발표 심사

- 가) 공개발표 심사는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한다.
- 나) 공개발표의 평가항목은 발표내용을 포함하여 모집분야와 관련된 「전문성」 및 「전달능력」을 함께 평가하되, 그 배점은 「전문성」20점, 「전달능력」 10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한다.
- 다) 공개발표는 5인 이상의 심사위원이 평가하고, 그 중 최고 및 최저점수 각 1개 씩을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3) 연구계획 심사

- 가) 연구계획 심사는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한다.
- 나) 지원자의 자기소개, 연구계획을 토대로 「연구활동능력」 및 「연구주제와 방향의 적합성」을 함께 평가하되, 그 배점은 「연구활동능력」5점, 「연구주제와 방향의 적합성」 5점을 만점으로 하여 평가하고, 그 중 최고 및 최저 점수 각 1개씩을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4) 임용 적합성 심사

- 가) 임용 적합성 심사는 인사위원회 구성원이 한다.
- 나) 임용 적합성 심사는 응모자가 제출한 제반 서류, 1단계 평가 성적, 공개발표, 연구계획 평가 성적 등을 고려하여 「연구실적 및 전문영역의 학술활동」10점, 「교수로서의 자질 및 윤리의식」 5점, 「대학 및 사회 기여도」5점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7. 임용추천

추천 대상자에 대하여 주관대학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추천된다.

8. 소장의 임무

소장은 교원공채와 관련된 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휘 감독하며, 각종 보고서 작 성의 최종 책임자가 된다.

9. 기타사항

가. 응모서류에 대한 의견서, 공개발표, 연구 및 연구계획, 임용적합성 항목 평가는 덧붙임 서식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나. 공채심사종합평가표의 각 항목 점수는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소 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한다.